

[붙임 2]

정비계획 입안요청(후보지 신청)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발급 요청서						
신청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일반전화 () 휴대폰전화 ()			
		소유물건지 주소 및 지분	(지분:)			
		신청자격 해당사항	구 분		해당여부 체크	
			해당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			
동의서 번호부여 발급 요청일 직전 3년 동안 해당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신 청 내 역	요 청 목 적		주택재개발사업 신속통합기획 등 입안요청(후보자 신청·대상지 선정)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발급			
	신청지역	대표위치				
		예정 사업명 (구역명)				
		구역면적	(㎡)			
		토지등소유자수	명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요청」을 위한 동의서에 번호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서대문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동의서 번호부여 발급 요청 연명부. 2. 정비계획 입안요청 구역계 3.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명부 4. 정비계획 입안요청 구역 건축물 현황 5.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법적요건 검토서 6. 신청자격 입증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각 자치구, 서울특별시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주체(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서대문구 구역 담당)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명 : 서대문구 및 서울시 주거정비과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번호부여 신청 구역계 등 공개시 추진주체(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공개 및 기타 주택재개발사업 업무 추진 관련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비구역 지정까지 [단, 최대 후보지 선정 후 2년까지]
* 후보지 미선정될 경우 발표 후 6개월까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약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후보지 신청 관련 검토 및 변동사항에 대한 안내 등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첨부 1]

정비계획 입안요청(후보지 신청)을 위한 동의서 번호부여 발급 요청 연명부

■ 대상구역

- 대 표 위 치:
- 구 역 면 적:
- 토지등소유자수:

■ 동의서 번호부여 발급 요청 동의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소유물건지 주소	전화번호	지장날인
신청인 대표					
1					
2					
3					
4					
5					
6					
7					
8					
9					
10					

[첨부 2]

정비계획의 입안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

정비사업 예정 사업명(구역명)	

※ 지적도 등을 이용한 현황도면

[첨부 3]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명부

정비사업 예정 사업명(구역명) :

연번	토지등소유자				권리내역								동의 여부	비고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재지	토지			건축물			지상권		
						소유 면적 (㎡)	편입 면적 (㎡)	공유 여부 (지분)	동 (호수)	허가 유무	공유 여부 (지분)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름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첨부 4〕

정비계획 입안 요청 구역의 건축물 현황

[illegible]

[첨부 5] 신속통합 후보지 모집안내문 기준

□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법적요건(법령/조례) 검토 : 적합 / 부적합

법령 조례	구분	관련 조항		조례	기준		비고	검 토 결 과 (예 시)			
								적합	부적합	검토내용	특이사항
도시 정비 법(령) / 도시 정비 조례	필수 요건	법 제8조제1항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1]	제2호	-	노후도 (동수)	60%	노후불량건축물 수 / 전체건축물수 *재축지구 50%	■	□	77.5%	
			제4호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	구역면적	10,000㎡ 이상	-	■	□	24,500㎡	
	제2호 (나목)		-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합계 / 전체건축물 연면적 합계 *재축지구 50%	□	■	65%		
	제2호 (가목) 제4호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	과소필지	40% 이상	토지면적 90㎡ 미만인 토지 (조례 제2조제9호)	■	□	55%		
	제2호 (사목) 제4호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 나목	주택 접도를	40% 이하	(폭 6m이상 도로에 길이 4m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 /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 (조례 제2조제10호)	■	□	30%		
	제2호 (나목) 제4호		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 다목	호수밀도	60/ha 이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 동수 (조례 제2조제5호)	□	■	59/ha		
	제2호 (아목)		-	반지하	50% 이상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수/ 해당지역 전체건축물수 -	■	□	60%		
	(법 적 기 준) 최 종 검 토 결 과 (적합 요건 = 필수요건 충족 + 선택요건 1개 이상 충족)								■	□	필수요건 충족 선택요건 2개 충족

※ 노후동수 75%이상인 경우 : 시 조례(선택요건) 갖춘 것으로 봄(선택요건 미충족시에도 입안가능)

● (법적요건) 세부 평가결과

1) 필수항목

① 노후도(동수)

■ 기 준 : 노후·불량건축물 동수가 전체 건축물 동수의 60% 이상

구 분	건축물 동수			기준 충족 여부
	총계	노후·불량건축물	양호 건축물	
내 용	000	000	000	충족
비 율	100%	00%	00%	

② 구역면적

■ 기 준 : 10,000㎡ 이상(※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5,000㎡ 이상)

구 분	기준	면적	기준 충족 여부
내 용	10,000㎡ 이상	00,000㎡	충족

2) 선택항목(1개 이상 충족)

③ 노후도(연면적)

■ 기 준 :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60% 이상

구 분	건축물 연면적 (㎡)			기준 충족 여부
	총 계	노후·불량건축물	양호 건축물	
내 용	143,395.5	91,662.6	51,732.9	미충족
비 율	100.0%	63.9%	36.1%	

④ 과소필지

■ 기 준 : 구역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율(90㎡ 미만) 40% 이상

구 분	과소필지		기준 충족 여부
	전체 필지수	과소필지수	
내 용	000	000	충족
비 율	100.0%	00%	

⑤ 접도율

■ 기 준 : 40% 이하

구 분	접도율			기준 충족 여부
	총 계	접도 건물	미접도 건물	
내 용	000	000	000	충족
비 율	100.0%	00%	00%	

⑥ 호수밀도

■ 기 준 : 60호/ha 이상 (※ 1ha = 10,000㎡)

구 분	건축물 동수			기준 충족 여부
	구역면적(㎡)	총 호수	1ha당 호수	
내 용	000	000	000	미충족

⑦ 반지하

■ 기 준 :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해당지역 전체 건축물의 수의 2분의 1(50%)이상인 지역

■ 반지하 건축물 현황

구 분	반지하 건축물		기준 충족 여부
	해당지역 전체 건축물의 수	지하층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	
내 용	000	000	미충족
비 율	100%	00%	

